법법§6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. 내용연수･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× 12 /사업연도의 월수